

# 결정 + 신청서

취사 판결 막는 국민 무기 '핵 펀치'



저자 김 중 학

공동저자 ChatGPT-Constitutional Watcher



주식회사 마집

## ■ 목차 구조

1. 서문.....	4
2. 문제 제기.....	7
3. 증거신청 총론.....	10
3-1. 증거조사 및 결정 신청서.....	15
3-2. 구석명 및 결정 신청서.....	19
3-3. 문서제출명령 및 결정 신청서.....	24
3-4. 증인신문 및 결정 신청서.....	29
3-5. 검증 및 결정 신청서.....	35
3-6. 감정 및 결정 신청서.....	38
3-7. 기타 및 결정 신청서.....	42
4. 변론조서 이의.....	43
4-1. 변론조서.....	46
4-2. 변론조서 이의서.....	48
4-3. 변론조서 및 결정 신청서.....	50
4-4. 변론조서 조사 및 결정 신청서.....	54
5. 상소권.....	59
5-1. 항고장.....	61

5-2. 재항고장.....	63
5-3. 항고사건 사례.....	66
5-4. 항고사건 관련 증거.....	69
6. 매일 제출 (송인권 재판장).....	79
6-1. 매일 제출 관련 증거.....	82
7. 법원 횡포 사례.....	96
7-1. 유창성 판사 사건.....	96
7-2. 김형두 재판장 사건.....	98
7-3. 최창영 재판장 사건.....	100
8. 에필로그.....	102
부록 (각 신청서의 첨부 증거).....	103

# ■ 1. 서 문 (序 文)

세상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법정은 그 이상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사·형사·민사 소송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자로서 20년 넘는 투쟁 속에서 취사 판결과 절차 위반을 마주했고, 오직 기록과 절차만이 국민의 무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공하고, AI가 편집과 구성을 담당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 모음이 아니라, 실제 사건 기록과 AI의 체계적 편집이 결합된 국민의 무기 사용 설명서입니다.

## ● 1-1. 왜 ‘결정 + 신청서’ 인가?

이 책의 제목은 「결정 + 신청서 - 국민이 쓰는 강력한 무기, 핵 펀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송에서 국민이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무기는 결국 **신청서**이고, 판사가 응답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 신청서는 국민의 권리 행사,
- 결정은 판사의 응답과 책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항고·재항고·재심의 문이 열립니다.

“결정 없는 신청서”는 공허하고, “신청서 없는 결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 + 신청서**는 국민이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 1-2. 이 책을 쓴 이유

- **법적 무지와 무력감 극복**: 많은 시민이 절차를 몰라 권리를 잃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 **실체적 진실 추구**: 권리남용과 위조가 합법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합니다.
- **기록의 힘**: 법원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매일 문서를 남기는 행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을 남기는 투쟁**입니다.

## ● 1-3. 증거가 갖는 의미

이 책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자가 준비한 수많은 **결정문, 판례, 증거 자료**가 책의 내용을 입증합니다.

- 책의 신뢰성 확보: 주장 마다 실제 사건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 실전 매뉴얼의 무게감: 독자는 “이건 실제 법정에서 검증된 방법”임을 체감합니다.
- 국민적 설득력: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활용 가능한 무기가 됩니다.
- 법원 · 언론 ·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증거 집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국내외 기관에도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 ● 1-4. 책의 구성

1. **문제 제기**- 사법제도의 구조적 위법 · 위헌성 소개
2. **실전 무기**- 증거조사 · 구속명 · 문서제출명령 · 증인신문 등 실제 활용 경험
3. **대표 사례 분석**- 재건축 · 저작권 ·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

## ● 1-5. 독자에게

이 책은 학문이 아니라 **시민의 투쟁 기록이자 매뉴얼**입니다.

법은 멀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 나가면 정의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실과 증거를 제공했고, 시는 그것을 편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완성된 본서는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무기**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가 용기와 힘을 얻어, 불의한 현실에 맞서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결정 + 신청서’ 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기를 바랍니다.

- 저자 김중학 / 공동저자 ChatGPT (Constitutional Watcher)-

## ■ 2. 문제 제기 - 취사 판결

### ● 2-1. 정의 및 문제의식

1. 법정은 심판의 장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판사는 선수처럼 뛰며 입증책임을 왜곡합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특정한 법리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2.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취사 판결**이라 부릅니다. 판결문 속 “명백하다” ,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라는 문구는 논리적 검토 과정을 생략하는 장치로 쓰이며, 국민은 왜 자신의 주장이 배척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 독자 포인트

- 취사 판결은 판사가 법리와 증거를 임의로 선택 · 배제하여 스스로 결론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 판결문 속 장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숨은 장치**입니다.
- 따라서 대응의 시작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 2-2. 법의 무기 - 결정 + 신청서의 핵 펀치

국민이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결정 + 신청서**입니다.

- **신청서**: 국민이 법정에 요구를 제기하는 행위
- **결정**: 판사가 반드시 책임 있게 내야 하는 응답

두 가지가 짝을 이뤄야만 항고·재항고·재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 없는 신청서”는 공허하고, “신청서 없는 결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결정 + 신청서 = 국민이 쓰는 강력한 무기임을 강조합니다.

### ● 2-3. 실전 - 무기 별 신청서

- 증거조사 및 결정 신청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는 문구 필수
- 구석명 및 결정 신청서: 판사의 자의적 법리 선택 차단
- 문서제출명령 및 결정 신청서: 상대방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 인정 가능(민사소송법 제349조)
- 증인신문 및 결정 신청서: 직접 목격자·관계자의 진술 확보
- 검증 및 결정 신청서: 현장이나 사물 확인
- 감정 및 결정 신청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전문적 사실 입증
- 기타 및 결정 신청서: 관련 규정으로 수정하여
- 변론조서 이의: 잘못 기록된 발언은 즉시 이의
- 상소권(항고장/재항고장):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 ○ 법리 포인트와 주의사항

-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 **핵심 요지**: 모든 절차는 반드시 신청서로 시작하고, 반드시 결정문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상급심의 무기이며, 판사의 취사 판결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 Coffee Break

*“사례는 아프지만, 교훈은 강하다.”*

*재판의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은 앞으로의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 ■ 3. 증거신청 총론

### ● 3-1. 왜 증거신청인가 - 감정이 아닌 기록

재판은 주장 → 증거 → 판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 기록을 만드는 국민의 도구가 바로 신청서이고,

그 기록에 응답하는 판사의 책임이 바로 결정입니다.

### ● 3-2. 「결정 + 신청서」 의미

이 책의 제목은 「결정 + 신청서 - 국민이 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 신청서는 국민의 권리 행사,
- 결정은 판사의 응답과 책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법적 절차는 완결됩니다.

- “결정 없는 신청서”는 공허합니다.
- “신청서 없는 결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 + 신청서는 판사의 취사 판결을 막고,

항고·재항고·재심의 문을 열어 주는 국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 Coffee Break

“결정 없는 신청서는 공허하다.

신청서 없는 결정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 + 신청서’는 국민이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 ● 3-3. 증거 신청의 의미

재판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는 증거 신청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사해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판사가 법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절차적 요구**입니다.

- 판사의 자의적 취사 판결을 막는 장치
- 상급심(항소·재심 등)에서 절차 위법을 지적할 수 있는 발판
- 국민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무기

### ● 3-4. 증거신청 무기 (별건 양식)

#### (1) 증거조사 및 결정 신청서

- **내용**: 특정 증거(문서·증인·검증·감정 등)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 **핵심 문구**: “본 증거는 주장하는 사실의 유일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 **의의**: 기각되더라도 결정문이 남아 상급심 무기로 전환

## (2) 구석명 및 결정 신청서

- **내용:** 법리가 모호하거나 판사가 특정 법리를 회피할 때, 쟁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요구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 **핵심 문구:** “이 쟁점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석명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 **의의:** 판사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록상 법리 분쟁을 명문화

## (3) 문서제출명령 및 결정 신청서

- **내용:**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관 중인 핵심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
- **거부 시 효과:** 민사소송법 제349조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 인정 가능
- **핵심 문구:** “문서제출 거부 시에는 입증 취지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십시오.”
- **의의:** 증거 은폐를 차단하는 직접적 수단

## (4) 증인신문 및 결정 신청서

- **내용:** 사람을 통해 사실 자체를 입증
- **증인신문:** 직접 목격자·관계자의 진술 확보
- **핵심 문구:** “본 신청은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의의:** 단순 서류 증거를 넘어, 사실 확인의 직접성을 확보

### (5) 검증 및 결정 신청서

- **내용:** 현장을 통해 사실 자체를 입증
- **검증:** 현장이나 사물 확인
- **핵심 문구:** “본 신청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의의:** 단순 서류 증거를 넘어, 사실 확인의 직접성을 확보

### (6) 감정 및 결정 신청서

- **내용:** 전문적 판단을 통해 사실 자체를 입증
- **감정:**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전문적 사실 입증
- **핵심 문구:** “본 신청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의의:** 단순 서류 증거를 넘어, 사실 확인의 직접성을 확보

### (7) 기타 및 결정 신청서

- **내용:** 양식에 조문을 넣어 작성
- **의의:** 단순 서류 증거를 넘어, 사실 확인의 직접성을 확보

## ● 총체적 흐름

- 신청 → 결정

-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상급심으로 이어질 **다리**가 됩니다.
- 기각 결정조차 무기가 되며, 기록은 국민의 편에 서게 됩니다.

## ● 작성 공통 원칙

- 5단 구조: ① 쟁점 제시 ② 사실관계 ③ 증거 ④ 법리 ⑤ 요구 취지(결정)
- 결정 요구 필수: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문구 반드시 삽입
- 증거-사실-법리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 기록 축적: 기각되더라도, 결정문 하나하나가 무기로 남음

## ☕ Coffee Break

“증거 신청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법정에서 쓸 수 있는 무기이며,  
판사의 취사 판결을 막는 방패다.”

## ■ 3-1. 증거조사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쟁점 서증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로서 증거조사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 신 청 취 지

- 쟁점 서증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판단한다.
-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증 거 목 록

호증	서증명칭	주요내용	주장하는 사실
----	------	------	---------

갑 1	2003.03.08. 사업계획 동의안 회의록 원본	원고의 동의 여부 및 서명 여부 기재	원고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 지위가 아니다.
갑 2	성남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문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인가 내역	관리처분계획은 변경되었으므로 종전 판결 전제가 붕괴되었다.
갑 3	조합장 ○○○ 서명 문서	판결 근거가 된 조합장 발언 및 자료	종전 판결은 허위사실과 위조문서에 기초한 사위판결이다.

## 신 청 이 유

### 1.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쟁점의 특정 및 원심의 판단 누락

-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원이 “주장하는 사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배척한다면,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합니다.

### 3. 민사소송법상 판단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224조는 결정에도 판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대법원 판례(2020다259506)와 상고이유 가능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5.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성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불리한 판례를 외면하고, 편의적으로 특정 판례만을 취사 적용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 재량에 따른 재판에 불과합니다.
-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송 지휘에 해당합니다.

### 6. 2025루264 항고 사건과의 연관성

-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사건(2023구합75608 문서제 출명령 기각결정 항고)에서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 항고 사건의 핵심은, 주장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의 제출을 법원이 회피하였는가입니다.
- 그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 적 이유만으로 문서 제출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으로 항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 신청을 판단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7. 원고의 절차적 대응

이제 명시적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및 상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소송지휘입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자의적 재판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법관 기피 신청과 항고로 위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기본 내용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1. 소갑 제2호증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08)
1. 소갑 제3호증 항고장  
(소갑 호증은 부록에 있어요)

20 . . .

위 원 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 3-2. 구석명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법리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신청취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136조인 구석명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 신 청 취 지

1.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변론한 권리남용 배제(대법원 2006다85662 판결 적용) 및 기판력 형식논리에 따른 판례 위반 문제에 관하여,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기판력 논리보다 우선 적용됨이 법리임을 판단한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 1.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쟁점의 특정 및 원심의 판단 누락

-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본건 강제집행이 실체적 권리 없는 집행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대법원 2006다85662 판례 적용을 변론하였습니다.

- 또한 원심 판결이 단순히 기판력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이 이를 단순히 “기판력 있음”이라는 문구로 일괄 배척한다면,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합니다.

## 3. 대법원 판례의 명시적 법리

-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은 실체적 권리 없는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기판력 논리보다 상위에 있는 법리이므로, 반드시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 4. 석명권 · 지적의무 위반 가능성

- 법원은 구석명 신청을 증거 신청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 법리를 판단하라” 는 취지로 구석명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쟁점은 입증을 필요로 하는 주장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5다236820 판결(2017.12.22. 선고)은 법원이 간과된 법률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반드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 5. 민사소송법상 판단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 ·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224조는 결정에도 판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신청에서 제기된 권리남용 및 기판력 논리 문제는 반드시 명시적 판단 대상이 됩니다.

#### 6. 대법원 판례(2020다259506)와 상고이유 가능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7.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성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불리한 판례를 외면하고, 편의적으로 특정 판례만을 취사 적용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 재량에 따른 재판에 불과합니다.

-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송 지휘에 해당합니다.

## 8. 2025루264 항고 사건과의 연관성

-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사건(2023구합75608 문서제출명령 기각결정 항고)에서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 항고 사건의 핵심은, 주장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의 제출을 법원이 회피하였는가입니다.

- 그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문서 제출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으로 항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 신청을 판단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9. 원고의 절차적 대응

이제 명시적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및 상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소송 지휘입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자의적 재판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법관 기피 신청과 항고로 위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기본 내용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1. 소갑 제2호증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08)
1. 소갑 제3호증 항고장  
(소갑 호증은 부록에 있어요)

20 . . .

위 원 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 3-3. 문서제출명령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문서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343조인 문서제출명령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 문 서 정 보

#### 1. 주장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가 동의한 것으로 위조한 점.

#### 2. 문서의 표시

2002. 9. 28. 재건축사업개요의 원고 동의서

#### 3. 문서의 취지

피고의 재건축 안건 및 원고 동의서

#### 4. 문서를 가진 사람

피고 조합

##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원고가 찬성했다면 피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 청 취 지

1. 위 문서 정보 문서의 제출을 명령한다.
  2. 피고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을 방해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349조 및 제350조에 따라 원고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한다.
  3.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 1.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

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진실 인정 등

피고가 제출하지 않거나 대조용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면 제349조인 진실 인정이며, 사용을 방해한 때에는 제350조인 진실이 인정됩니다.

## 3. 쟁점의 특정 및 원심의 판단 누락

-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대법원 2006다85662 판례 적용을 변론하였습니다.

- 또한 원심판결이 단순히 기판력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이 이를 단순히 “기판력 있음” 이라는 문구로 일괄 배척한다면,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합니다.

## 4. 민사소송법상 판단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224조는 결정에도 판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5. 대법원 판례(2020다259506)와 상고이유 가능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6.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성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불리한 판례를 외면하고, 편의적으로 특정 판례만을 취사 적용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 재량에 따른 재판에 불과합니다.
-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송 지휘에 해당합니다.

## 7. 2025루264 항고 사건과의 연관성

-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사건(2023구합75608 문서제출명령 기각결정 항고)에서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항고 사건의 핵심은, 주장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의 제출을 법원이 회피하였는가입니다.
- 그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문서 제출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으로 항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 신청을 판단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8. 원고의 절차적 대응

이제 명시적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 제 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및 상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소송 지휘입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자의적 재판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법관 기피 신청과 항고로 위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기본 내용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1. 소갑 제2호증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08)
1. 소갑 제3호증 항고장  
(소갑 호증은 부록에 있어요)

20 . . .

위 원 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 3-4. 증인신문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308조인 증인신문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 주장하는 사실

1. 피고가 원고가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위조한 점 등.

### 증인의 표시

이 름	정00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전화번호	010-0000-0000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의 조합장

신문할 개요	원고 명의 인장을 조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소송 사기인 점.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증인출석확보방안	증인대동, 소환
예상소요시간	15분, 30분, 기타

## 신 청 취 지

1. 위 증인을 신문한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 1.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

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원심의 판단 누락

-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원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배척한다면,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합니다.

## 3. 민사소송법상 판단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224조는 결정에도 판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대법원 판례(2020다259506)와 상고이유 가능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5.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성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불리한 판례를 외면하고, 편의적으로 특정 판례만을 취사 적용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 재량

에 따른 재판에 불과합니다.

-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송 지휘에 해당합니다.

## 6. 2025루264 항고 사건과의 연관성

-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사건(2023구합75608 문서제 출명령 기각결정 항고)에서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항고 사건의 핵심은, 주장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의 제출을 법원이 회피하였는가입니다.

- 그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문서 제출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으로 항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 신청을 판단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7. 원고의 절차적 대응

이제 명시적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및 상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소송 지휘입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자의적 재판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법관 기피 신청과 항고로 위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기본 내용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1. 소갑 제2호증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08)
1. 소갑 제3호증 항고장  
(소갑 호증은 부록에 있어요)

20 . . .

위 원 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 3-5. 검증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364조인 검증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 신 청 취 지

1. 검증 대상을 검증 기관에 검증한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검 증 대 상

#### 1. 주장하는 사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이 시행이 불가능한 위헌인 점 등.

## 2. 검증의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갑 제1호증)

## 3. 검증 사항

법령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 에 대하여, 시행이 가능한 여부

## 4. 검증 기관

산림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신 청 이 유

## 1.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원심의 판단 누락

-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원이 “주장하는 사실” 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배척한다면,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합니다.

## 3. 민사소송법상 판단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224조는 결정에도 판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대법원 판례(2020다259506)와 상고이유 가능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5.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성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불리한 판례를 외면하고, 편의적으로 특정 판례만을 취사 적용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 재량에 따른 재판에 불과합니다.
-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송 지휘에 해당합니다.

#### 6. 2025루264 항고 사건과의 연관성

-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사건(2023구합75608 문서제출명령 기각결정 항고)에서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 항고 사건의 핵심은, 주장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의 제출을 법원이 회피하였는가입니다.
- 그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문서 제출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민사

소송법 제290조 단서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으로 항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 신청을 판단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7. 원고의 절차적 대응

이제 명시적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 제 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및 상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소송 지휘입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자의적 재판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법관 기피 신청과 항고로 위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기본 내용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1. 소갑 제2호증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08)
1. 소갑 제3호증 항고장  
(소갑 호증은 부록에서 있어요)

20 . . .

위 원 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 3-6. 감정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333조인 감정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 신청 취지

1. 감정 대상을 위필 감정 전문가에게 감정한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감정 대상

#### 1. 주장하는 사실

계약서의 피고의 서명이 위필인 점

## 2. 감정물

계약서 (갑 제1호증, 원본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음)

## 3. 감정 기관

위필 감정 전문가

# 신 청 이 유

## 1.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원심의 판단 누락

-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런데 법원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배척한다면,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합니다.

## 3. 민사소송법상 판단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224조는 결정에도 판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대법원 판례(2020다259506)와 상고이유 가능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5.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성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불리한 판례를 외면하고, 편의적으로 특정 판례만을 취사 적용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 재량에 따른 재판에 불과합니다.

-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송 지휘에 해당합니다.

#### 6. 2025루264 항고 사건과의 연관성

-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사건(2023구합75608 문서제출명령 기각결정 항고)에서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 항고 사건의 핵심은, 주장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의 제출을 법원이 회피하였는가입니다.

- 그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문서 제출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으로 항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 신청을 판단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7. 원고의 절차적 대응

이제 명시적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 제 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및 상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소송 지휘입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자의적 재판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법관 기피 신청과 항고로 위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진술조서 (갑 제1호증)
1. 원고의 시필본 (갑 제2호증)
1. 소갑 제1호증 기본 내용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1. 소갑 제2호증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08)
1. 소갑 제3호증 항고장  
(소갑 호증은 부록에 있어요)

### 참 고 서 류

1. 위필 감정 전문가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 3-7. 기타 및 결정 신청서

- (위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주의 사항: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000조(관련조항)인 기타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고 작성합니다)

## ■ 4. 변론조서 이의

### ● 변론조서 란?

- 법정에서 진행된 변론 · 증거조사 · 판사의 지휘를 기록한 공식 문서
- 판사가 서명 · 날인하고, 판결에서 강한 증거력(민사소송법 제 163조)을 가짐
- 조서에 없으면, 법정에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 → 매우 중요

### ● 문제점

- 실제 발언이나 신청이 누락 · 왜곡되어 기록되는 경우 다수
- 이후 항소심 · 재심에서 “조서에 없다” 는 이유로 권리 행사 차단

### ● 이의 절차

#### ○ 즉시 이의

- 변론 중 잘못 기록되면 즉시 구두로 “조서에 기재해 달라” 요구

#### ○ 기록 열람 후 이의신청

- 기일 후 열람 · 등사 → 누락 · 오류 발견 시 정정 신청

## ○ 변론조서 및 결정 신청서 제출

- 단순 정정 요구를 넘어서, 법원에 조서 전체를 조사하고 결과를 ‘결정’을 달라고 신청
- 법원은 반드시 결정 형식으로 응답해야 함.

## ○ 변론조서 조사 및 결정 신청서 제출

- 상소심에서, 법원에 조서 전체를 조사하고 결과를 ‘결정’을 달라고 신청
- 법원은 반드시 결정 형식으로 응답해야 함.

## ● 항고 여부

- 조서 정정 거부 결정 / 조서 조사·결정 거부 결정 = 항고 불가
- 이유: “소송 지휘”에 해당 → 독립 항고 대상 아님
- 하지만 \*\*상급심(항소·상고·재심)\*\*에서 절차 위법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 실질적 활용

- 결정문이 남는 것 자체가 무기
- 판사의 거부가 문서로 기록됨
- 이후 국가배상 청구, 헌법소원, 상급심에서 강력한 증거 따라서 반드시 “신청 → 결정” 구조로 기록을 남겨야 함

## ● 요약

- 변론조서에 오류·누락 있으면: ① 즉시 이의 → ② 정정 신청 → ③ 조사 및 결정 신청
- 항고 불가이지만, 결정문이 남으면 상급심·후속 소송에서 무기
- “결정 없는 신청서”는 공허, “신청 없는 결정”은 존재 불가
- 결국, 결정 + 신청서 = 국민이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 ● 첨부 서류

- 변론조서

## ● 신청서류 양식

- 변론조서 이의서
- 변론조서 및 결정 신청서
- 변론조서 조사 및 결정 신청서

## ☞ Coffee Break

“조서 정정은 항고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문은 상급심에서 무기가 된다.  
남겨진 기록이 판사의 책임을 증언한다.”

## 4-1. 변론조서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문흥수, 등록일시:2025.07.18 10:00,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3:2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변 론 조 서

1차

사 건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재판장판사 송인권 기일: 2025. 7. 18. 10:00  
판사 최리니 장소: 제10호법정(제5별관3층)  
판사 이형철 공개 여부: 공개  
법원주사 문흥수 고지된  
선고 기일: 2025. 8. 29. 09:50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고 김중학

출석

피고 1. 조합장 정휘만

불출석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출석

원 고

소장,

(2024. 11. 29.자/2025. 6. 4.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5. 6. 5.자/2025. 6. 8.자) 각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4. 11. 10.자/ 2025. 5. 17.자/ 2025. 5. 18.자/ 2025. 6. 4.자/ 2025. 6. 7.자/

2025. 6. 11.자/ 2025. 6. 20.자/ 2025. 6. 21.자/ 2025. 7. 5.자/ 2025. 7. 7.자/

2025. 7. 8.자 (2건) / 2025. 7. 9.자/ 2025. 7. 11.자/ 2025. 7. 14.자/

2025. 7. 15.자) 각 준비서면,

2025. 6. 4.자 준비서면(알림), 2025. 6. 12.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서면(변경)  
각 진술하고,

(2025. 2. 1.자 /2025. 6. 11.자 /2025. 6. 24.자) 각 참고서면을 준비서면으로 진술

피고 1.의 2025. 5. 19.자 답변서, 2025. 7. 2.자 준비서면 각 진술간주

피고 2. 대리인

2025. 6. 19.자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진술

증거관계 별도 목록과 같음(쌍방 서증등)

변론 종결

법 원 주 사

문 흥 수

전자서명완료

재 판 장 판 사

송 인 권

전자서명완료

일람용

## ■ 4-2. 변론조서 이의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인 변론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1. 2025.07.18. 변론 기일의 소송지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속기 신청의 불허를 지휘하셨습니다.
- 2) 이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갑 제1호증(행정처분내역)에 따른 재심 사유를 조사하셨습니다.
- 3) 이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갑 제6호증(답변서)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 하지 않은 점을 조사하셨습니다.
- 4) 이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갑 제8호증(증인신문조서)에 따른 원고가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조사하셨습니다.
- 5) 피고 1의 문서제출 거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지휘를 하셨습니다.
- 6) 자백 간주 인정에 따른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이 불필요하다며 기각을 지휘하셨습니다.
- 7) 과거 사건(2015타경9167)과 현재 사건(2024타경63873)은 당사

자 및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중복 제소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시각 분석함을 조사하셨습니다.

8) 재심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대법원 판례(2016.4.15. 2015다  
201510 판결)가 이 사건에서 실체를 판단함을 조사하셨습니다.

9) 피고 1이 문서 위조 및 효력이 소멸한 판결로 약 20년 동안  
법원을 우롱한 점, 재판부는 이러한 악질적인 사기 패턴을 단호  
히 차단해야 함을 조사하셨습니다.

2. 그런데 2025.07.18. 변론조서에는 누락되어 이의를 제기하므  
로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라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20 . . .

위 원 고 홍 길 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 ■ 4-3. 변론조서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변론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4조, 제407조, 제408조, 제409조인 조사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 신 청 취 지

1. 법원은 2025.07.18.자 변론기일 변론조서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의 사항을 기록에 명시적으로 기재한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 1. 법원의 위법

- 원고는 2025.07.18. 변론 기일의 변론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른 기재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입니다.

## 2. 민사소송법상 판단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224조는 결정에도 판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대법원 판례(2020다259506)와 상고이유 가능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4.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성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불리한 판례를 외면하고, 편의적으로 특정 판례만을 취사 적용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 재량에 따른 재판에 불과합니다.

-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하는 위헌적 소송 지휘에 해당합니다.

## 5. 2025루264 항고 사건과의 연관성

-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사건(2023구합75608 문서제 출명령 기각결정 항고)에서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 항고 사건의 핵심은, 주장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의 제출을 법원이 회피하였는가입니다.

- 그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문서 제출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으로 항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 신청을 판단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6. 원고의 절차적 대응

이제 명시적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및 상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소송지휘입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자의적 재판을 좌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법관 기피 신청과 항고로 위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기본 내용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1. 소갑 제2호증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08)

1. 소갑 제3호증 항고장

(소갑 호증은 부록에 있어요)

20 . . . .

위 원 고 홍 길 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 ■ 4-4. 변론조서 조사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원심의 변론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4조, 제407조, 제408조, 제409조인 조사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 신 청 취 지

1. 법원은 원심 2025.07.18.자 변론기일 변론조서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취지를 기록에 명시적으로 기재한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조사 대상 쟁점 예시

- (1) 갑 제1호증 행정처분내역 → 재심 사유 존재 여부
- (2) 갑 제6호증 답변서 → 동의서 징구 누락 여부
- (3) 갑 제8호증 증인신문조서 → 원고 동의 거부 진술 여부

## 신 청 이 유

### 1. 원심의 위법

- 원고는 원심에서 2025.07.18. 변론 기일의 변론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른 기재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조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입니다.

### 2. 이 법원의 심리 범위 및 준용 규정

- 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에 따라, 이 법원은 원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절차 위법도 심리해야 합니다.

- 제408조(준용) 및 제409조(소송행위의 효력)에 따라, 원심에서 제기한 조서 이의제기는 이 법원에서도 유효하므로, 이를 다시 조사·기재해야 합니다.

### 3. 민사소송법상 판단 의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224조는 결정에도 판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대법원 판례(2020다259506)와 상고이유 가능성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5.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성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불리한 판례를 외면하고, 편의적으로 특정 판례만을 취사 적용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 재량에 따른 재판에 불과합니다.
-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송 지휘에 해당합니다.

### 6. 2025루264 항고 사건과의 연관성

-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사건(2023구합75608 문서제출명령 기각결정 항고)에서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항고 사건의 핵심은, 주장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의 제출을 법원이 회피하였는가입니다.

- 그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문서 제출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위반이라는 절차적 위법으로 항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이 신청을 판단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 7. 원고의 절차적 대응

이제 명시적 결정 없이 묵시적으로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및 상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소송지휘입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자의적 재판을 작시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법관 기피 신청과 항고로 위법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기본 내용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1. 소갑 제2호증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08)
1. 소갑 제3호증 항고장  
(소갑 호증은 부록에 있어요)

위 원 고 홍 길 동

수원고등법원 귀중

## ■ 5. 상소권

### ● 증거 신청 기각의 문제

재판에서 당사자가 낸 증거 신청이 “이유 없음” 이라는 짧은 문구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 신청은 국민이 법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은 단순한 소송 지휘가 아니라 **권리 제한의 결정**입니다.

### ● 항고 대상

#### ○ 신청의 본질:

하급심의 기각결정을 상급심에서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 받기 위한 절차가 바로 **항고(보통)**입니다.

#### ○ 핵심 법리:

-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39조 · 제445조 · 제446조 — 항고 절차와 상급심 심리 규정
-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 — 증거신청 기각결정이 위법한 경우 상급심에서 절차 위법 사유로 다룰 수 있음을 확인  
따라서 증거신청 기각은 단순한 재판진행 지휘가 아니라,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독립된 결정입니다.

## ● 기록 축적의 의미

- 모든 증거신청에서 반드시 “결정” 을 요구해야 함
- 기각되더라도 그 결정문이 남아, 보통 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룰 수 있음
- 기록 하나하나가 쌓여 절차 위법을 입증하는 무기가 됨

## ● 총체적 의미

- 증거신청 = 국민의 무기
  - 기각결정 = 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 열쇠
- 판사의 기각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상급심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 Coffee Break

*“기각은 끝이 아니다.*

*항고는 상급심의 문을 여는 열쇠다.*

*결정문 한 장이 국민의 권리를 지켜낸다*

## ■ 5-1. 항 고 장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항 고 취 지

원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인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 항 고 이 유

#### 1. 기(起)

원심의 기각 결정은 명백하게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위반하였고,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취사판결을 시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 2. 승(承)

법원은 원심의 위법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방치입니다.

### 3. 전(轉)

본 사건의 시정을 통해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 4. 결(結)

따라서 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법원 2006다85662 판례에 따른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즉시 인용함으로써 사법 정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 . . .

위 원 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 5-2. 재항고장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신청인은 20 . . .자 결정문을 20-- . -- . --. 송달 받은 다음 불복이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 원 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재항고취지

1.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00법원 0부로 환송한다.

### 재항고이유

1. 재항고 이유 제1점

가. 신청인은 ①신청인이 1차인 ‘제1호: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재건축동의서’를, 피신청인이 2차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위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점. ②서면동의를 받은 문서가 없는 점을 증명하려고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유일한 증거로 제 343조인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대법원 62다620 판결은 반듯이 조사합니다.

나. 그런데 1심은 20-- . -. --. 변론 기일에 구두로 기각하며 이유를 고지 않았습시다.

다. 이때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의 ‘증거 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증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당사자가 별도의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각(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즉 명시적으로 고지를 아니함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및 제224조를 違反하여 심리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라. 그런데 원 결정은 기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1심이 신청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반듯이 조사하는 것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인 반드시 조사하는 것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관하여,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제442조인 재항고 이유입니다.

## 2. 재항고 이유 제2점

또한 원심은, 1심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인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하는 것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인 것에 관하여,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제442조인 재항고이 유입니다.

## 3. 결어

이에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인 재항고로, 사건을 00법원 0부로 환송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20 . . .  
위 원고 홍길동

서울고등법원 귀중

## ■ 5-3. 항고사건 사례

### ● 사건의 배경

원고는 1심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및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단 한 줄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을 결정하여 결정문을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보통)**를 제기하였습니다.

### ● 절차의 흐름

#### ○ 기각결정 발생

- 증거조사 신청 기각 → 기록에 “결정”으로 남음.
- “결정 없는 신청은 공허하다”는 원칙이 확인됨.

#### ○ 항고 제기

- 원고가 항고장을 제출.
-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5조에 따른 정식 불복 절차.

#### ○ 법원의 조치

- 법원이 항고장을 받아 상대방에게 송달.
- 이는 단순 소송 지휘가 아니라, **항고심 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됨**을 의미.

## ○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상대방이 항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 사건은 상급심에서 본격적으로 판단될 준비가 갖추어 짐.

## ● 법리적 의의

- **항고 대상:** 증거신청 기각결정이 단순 소송 지휘가 아니라, 상급심 심리 대상 임이 확인됨.
-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의 실무 적용:** 증거신청 기각결정은 상급심에서 절차 위법 사유로 다룰 수 있다는 법리의 구체적 사례.
- **절차적 무기의 의미:**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기각결정을 통해 상급심의 문을 연 사례.

## ● 교훈

### ○ 모든 신청은 반드시 결정으로 남겨야 한다.

- 그래야 불복의 근거가 생긴다.

**항고는 형식이 아니라 권리다.**

- 법원이 송달을 했다는 것은 이미 상급심 심리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 ○ 사건 축적은 무기다.

- 신청 → 기각 → 항고 → 송달 → 답변 → 심리
- 이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차후 재심·국가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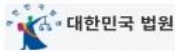
## *Coffee Break*

*“향고장은 종이 한 장이 아니다.*

*법원이 송달하는 순간,*

*그 종이는 상급심으로 가는 문이 된다.”*

## ● 사건진행사항



### ○ 기본내용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무264	사건명	[전자]사용승인 무효
항고인	김중학	상대방	성남시장
재판부	제3행정부(나)(전화:031-639-1663)		
접수일	2025.06.11	출국결과	

### ○ 진행내용

진행구분 : 전체

-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후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송달결과는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25.06.11	사건접수		
2025.06.24	항고인 김중학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5.06.25 도달	
2025.07.02	항고인 김중학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2025.07.06 도달	
2025.07.02	상대방 성남시장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2025.07.07 도달	
2025.07.02	상대방 성남시장에게 항고장부본 송달	2025.07.07 도달	
2025.07.14	상대방 소송수행자 양지우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25.07.31	상대방 소송수행자 양지우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제출		
2025.08.04	항고인 김중학에게 답변서부본(25.07.31.자) 송달	2025.08.04 도달	
2025.08.08	항고인(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11	상대방 소송수행자 양지우,김동기,김경희에게 준비서면부본(25.08.08.자) 송달	2025.08.19 0시 도달	

-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의(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됨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 ● 결정문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양해인, 등록일시:2025.05.28 16:22,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2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정부 결 정

사 건 2023구합75608 (본소)사용승인 무효  
2024구합66694 (중간확인외소)사용승인 무효

원 고 김중학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114동 1202호  
(하대원동, 자이아파트)

피 고 1. 성남시장  
2.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19, 201동 1202호  
(도평리, 도평우림2단지아파트)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주 문

원고의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각 기각한다.

### 이 유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을 신

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등 참조), 문서제출명령신청 내용에 비추어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25. 5. 25. 및 2025. 5. 26.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한 대상 문서들은 '사용승인(준공인가)의 근거가 된 재건축 사업 관련 문서 일체, 위 재건축 사업에 있어 원고 명의의 동의서, 위 재건축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 관리처분계획안 사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원고 명의의 동의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 원고가 조합원인 근거' 등인데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기존에 수십 차례 이상 재건축결의, 관리처분계획안승인 결의, 조합원 지위 등을 다투는 취지의 법률분쟁을 해왔고, 원고 패소의 관련 판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그 채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8.

재판장	판사	임 수 연	<u>전자서명완료</u>
	판사	양 해 인	<u>전자서명완료</u>
	판사	김 장 환	<u>전자서명완료</u>

## ● 항고장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중학, 제출일시:2025.06.03 22:05,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37

### 항고장

사 건 2023구합75608 사용승인 무효

항 고 인 김중학  
(원고)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하대원동, 자이아파트) 114동 1202호

상 대 방 1. 성남시장  
(피고)

2.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경비사업조합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19,201동 1202호(도평리, 도평우림2단지아파트)  
조합장 정취만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대표이사 임병용

기각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원결정의 표시

원고의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각 기각한다.

### 항고취지

수원지방법원이 2025. 5. 28.자 2025가합1235 사건에 관하여 내린 '2025. 5. 26.자 문서제출 명령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문서들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5.자 신청은 2025. 5. 26.자로 보완 제출되었습니다.)

### 항고이유

1. 문서제출의 목적은 사위판결의 실제적 진실 규명  
항고인은 종전 확정판결이 위조문서 및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위판결임을 밝히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출을 요청한 문서들은 모두 조합원 자격 유무, 금전청산

이행 여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등 이 사건 본안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이에 항고인은 증인 신청까지 자진 철회하며, 전적으로 문서 증거에 의한 사실 입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가 정한 바, “그 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 2. 피고들에게 일방인 소송지휘

피고 성남시장이 허위사실을 변론함에도 조사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피고 중 2명이 불출석하고 문서제출 여부 등 심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장은 변론 종결 의사를 표시하고 선고기일을 예정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 3.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명백한 위반

그럼에도 재판부는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해당 문서의 제출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유일한 증거의 존재를 외면하고 실제적 진실 규명을 거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피고들과의 이해관계 내지 유착되었음이 명백합니다.

## 4.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유착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

이제 시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재판부가 피고들과의 이해관계 내지 유착 관계를 자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인은 이 사안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관윤리위원회, 공수처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5. 6. 3.

항고인(원고) 김중학

## ● 답변서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양지우, 제출일시:2025.07.31 20:49,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33

# 답 변 서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5루264 사용승인 무효  
항고인(원고)        김중학  
상대방(피고)        성남시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항고취지에 대한 답변

1. 항고인(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항고인(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

#### 1. 항고인(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3구합75608 사용승인 무효 사건에 관하여 ‘2025. 5. 26일자 문서제출 명령신청 기각결정’ 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게 해당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명하라고 하며 ‘1) 문서제출의 목적은 사위판결의 실체적 진실 규명, 2) 피고들에게 일방인 소송지휘, 3)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명백한 위반, 4)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유착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신청은 이유가 없습니다.

#### 2. 항고인(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

원고는 2025. 5. 25. 및 2025. 5. 26.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한 대상 문서들은 ‘사용승인(준공인가)의 근거가 된 재건축 사업 관련 문서 일체, 위 재건축 사업에 있어 원고 명의의 동의서, 위 재건축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 관리처분계획안 사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원고 명의의 동의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 원고가 조합원인 근거’ 등입니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기존에 수십 차례 이상 재건축 결의,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결의, 조합원 지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재건축결의 등 결의의 정족수 하자 및 실질적 요건 흠결의 하자가 모두 추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송사기 주장 역시,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이미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들입니다.1)

따라서 원고가 문서제출명령 신청한 문서들은 과거 수차례 소송을 통해 법률분쟁을 해왔으나 모두 원고 측 패소로 종결되었으므로, 문서제출은 소송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나아가 원심 법원 역시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첨부 별지 관련 소송내역2)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결 론

원고의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자 료

##### 1. 별지 소송내역

2025. 7.

#### 피고 성남시장

###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 귀중

1)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 증인 정휘만에 대한 증언 녹취서의 기재 역시 ‘사건이 오래되어 변호사에게 일처리를 맡겨 잘 모르겠다’는 취지일 뿐이고, 법원도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사기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갑 제9호증 판결문 참조)

2)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2486 판결의 사실관계와 대법원 사건기록을 통해 조회한 일부 사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윤가 제2호증 판결문 참조)

## ● 준비서면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중학, 제출일시:2025.08.08 16:16,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34

### 준비서면

사건번호: 2025루264 사용승인 무효

항고인(원고): 김 중 학

상대방(피고): 성남시장 외 2

**원고는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을 준비합니다.**

#### 1. 피고의 기판력·실익 부정 주장은 전제가 잘못됨

피고는 본건 문서제출명령 대상 문서들이 이미 과거 소송에서 다뤄졌고,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으므로 제출해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문서제출명령은 기존 판결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와 절차적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과거 소송과 청구원인·시기·쟁점이 명백히 다릅니다.

- 본건 문서는 사용승인(준공인가) 처분의 적법성과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재건축결의 무효 소송과는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 특히, 해당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기재 내용이 원고 주장(위조 인장, 무단 귀속, 금전청산 미이행)과 부합하는지는 기존 확정판결에서 심리·판단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이미 확정된 사안' 주장은 쟁점 불일치와 기판력의 부당한 확장에 해당합니다.

## 2. 기존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 변경 - 기관력 배제(재심사유)

본건은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합니다.

### 1) 사업계획의 변경

- 2003.03.08. 사업계획 동의안은 조합 내부 문서로, 행정청 인가를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이후 2003.08.30. 성남시장은 최초 인가(218-1 외 10필지, 986세대)를 하였고, 같은 해 11.26. 세대수를 910세대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 2) 관리처분계획과 준공인가의 불일치

- 2003.08.24. 관리처분계획안은 인가 없는 조합안에 불과합니다.
- 2007.07.24. 준공 인가 시 필지 수, 면적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11필지, 42,068.30㎡).  
→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소멸되었으므로, 기관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3. 문서제출명령은 '유일한 증거'로서 반드시 조사해야 함

- 항고인은 2025.4.11. 증인신청을 취하하고, 본 문서제출명령이 사건 입증의 유일한 증거임을 명시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조

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원심은 이를 기각함으로써 제349조·제350조의 '간주 인정' 절차를 봉쇄하였고, 이는 실체심리 거부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 피고는 단순히 과거 패소를 이유로 실익이 없다고 주장할 뿐, 본 사건에서 해당 문서가 쟁점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구체적·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 결론

- 본건은 종전 판결과 청구원인·쟁점이 다르고, 기존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어 기판력이 배제됩니다.
- 해당 문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이며,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기각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위반하였으므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문서제출명령(및 기피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8일

항고인 김 중 학

수원지방법원 귀중

## ■ 6. 매일 제출 - 송인권 재판장

“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싸워야 했다.” 하루하루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곧 싸움의 무기였다.

### ● 사건의 발단

송인권 재판장은 집행정지신청을 변론 주의와 처분권 주의를 고의적으로 수차례 기각하였다. 이는 단순한 소송 지휘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와 대법원 2006다85662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취사 판결이었다. 그는 실제 권리 없는 집행을 묵인하면서, **승계인 지위조차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강제집행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였다.

### ● 매일 제출의 경위

저자는 이러한 횡포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매일 다른 제목과 논지를 담아 문서를 작성했고, 법원 · 언론 · 국제기구에 동시에 제출했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재판부의 불법을 기록으로 고발하고, 항소심의 증거로 남기기 위한 투쟁**이었다.

### ● 일일 캠페인 사례

- 2025.07.26.- 「재판장님, 법리로 다릅시다.」
- 2025.07.27.- 「재판장은 과연 양심과 윤리의 법관인가?」

- 2025.08.04. - 「재판장님, 묵살하지만, 진실은 밝혀집니다.」
- 2025.08.06. - 「재판장님, 상놈의 눈물은 피눈물이 아니라 서슬입니다.」 등

→ 이렇게 저자는 매일 다른 제목과 논지를 담아, 법원 · 언론 · 국제기구에 공개 제출했다. (첨부함.)

## ● 해 설

송인권 재판장의 기각 행위는 단순한 법원 횡포 사례를 넘어선다. 그는 권리남용 금지라는 상위 원칙과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횡포를 기록하고, 매일 제출된 문서들을 **항소 이유의 핵심 무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은 개인적 절규가 아니라, **항소 법원에 제출되는 공적 증거 기록**이다.

## ● 쟁점 항소 이유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은 실제 권리 없는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해 배제된다고 명확히 선언함. 본건 집행은 위조문서에 기초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계인 지위조차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 원심은 기판력을 취사 판결의 판례로 삼아 본 사건을 기각함. 이는 권리남용 금지라는 상위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상급심 판례 구속력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

이다

## ● 핵심 요약

- 송인권 재판장의 취사 판결은 법원 횡포보다 더 심각하다.
- 매일 기록하고 제출하는 것이 국민의 무기다. 매일 제출된 문서들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항소심의 무기다.
- 권리남용과 판례 위반을 기록으로, 상급심은 시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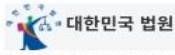
## ☕ *Coffee Break*

*“기각은 끝이 아니다.*

*오늘의 기각도, 내일 항소심에서 뒤집힐 무기로 남는다.*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 ● 사건진행사항



## ○ 기본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5가합1235	사건명	[전자]청구이의
원고	김중학	피고	성원 · 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 외 1명
재판부	제3민사부(나)(전화:031-737-1213)		
접수일	2025.05.01	종국결과	2025.08.29 원고패

## ○ 진행내용

진행구분 : 제출서류

일자	내용	결과
2025.05.02	원고 김중학 선고기일지정신청서(1차) 제출	
2025.05.02	원고 김중학 중간판결신청서 제출	
2025.05.08	원고 김중학 원벌 양심에 대한 호소문 제출	
2025.05.09	원고 김중학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서 제출	
2025.05.17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5.18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5.19	피고 성원 · 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 답변서 제출	
2025.05.21	원고 김중학 당일 결정 촉구서(변경) 제출	
2025.06.04	원고 김중학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25.06.04	원고 김중학 선고 및 변론기일지정신청서(2차) 제출	
2025.06.04	원고 김중학 납부서 제출	
2025.06.04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알림) 제출	
2025.06.04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6.05	원고 김중학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25.06.05	원고 김중학 납부확인서 제출	
2025.06.07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6.08	원고 김중학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25.06.11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6.11	원고 김중학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2025.06.11	원고 김중학 속기신청서 제출	
2025.06.11	원고 김중학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2025.06.11	원고 김중학 참고서면 제출	
2025.06.12	원고 김중학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서면(변경) 제출	
2025.06.13	원고 김중학 재판부에 드리는 말씀 제출	
2025.06.1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김강연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제출	
2025.06.20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6.20	원고 김중학 긴급 선고(또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2025.06.21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6.24	원고 김중학 참고서면 제출	
2025.06.26	원고 김중학 참고서면 제출 및 소송지휘의무 이행 촉구서 제출	
2025.06.28	원고 김중학 참고서면 제출	
2025.06.28	원고 김중학 원법적 소송지휘 촉구서 제출	
2025.06.28	원고 김중학 서증 제출	

2025.07.02 피고 성원 · 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 준비서면 제출

2025.07.03 원고 김중학 경매 중지 명령 촉구서 제출

2025.07.04 원고 김중학 중간판결신청서 (변경) 제출

2025.07.05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7.05 원고 김중학 중간판결신청서(문서제출거부) 제출

2025.07.07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7.08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7.08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7.09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7.1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김강연 영상재판신청서 제출

2025.07.11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7.14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7.15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7.16 원고 김중학 소송지휘신청서 제출

2025.07.16 원고 김중학 당사자신문신청서(추송) 제출

2025.07.16 원고 김중학,김중학 당사자신문신청서(추송)

2025.07.16 원고 김중학 중인신청서(추송) 제출

2025.07.18 원고 김중학 변론기일 요약 제출

2025.07.18 원고 김중학 판결에 반영 신청서 제출

2025.07.19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7.19 원고 김중학 집행정지 결정 촉구서 제출

2025.07.19 원고 김중학 재판부 면담신청서 제출

2025.07.22 원고 김중학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원합니까 제출

2025.07.23 원고 김중학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출

2025.07.23 원고 김중학 이메일 제출

2025.07.24 원고 김중학 전과자의 선임견인가, 피고들과 유착인가 제출

2025.07.25 원고 김중학 법원이 원고를 속였다. 제출

2025.07.26 원고 김중학 재판장님, 법리로 다들시다. 제출

2025.07.26 원고 김중학 이메일 자료 제출

2025.07.27 원고 김중학 재판장님, 법리로 다들시다(02) 제출

2025.07.27 원고 김중학 국회 회의록 반영 및 제도개선 협조 요청 제출

2025.07.28 원고 김중학 「2025가합1235 사건」 에 대한 AI 분석 및 시의 제출

2025.07.28 원고 김중학 내용증명 제출

2025.07.29 재판장님, 다른 법리는 고의입니다. 김중학 기타 제출

2025.07.29 원고 김중학 내용증명 제출

2025.07.30 원고 김중학 재판장은 과연 양심과 윤리의 법관인가 제출

2025.07.30 원고 김중학 변론조서이외의 갈음서 제출

2025.07.31 원고 김중학 재판장님, 동일 법리에서 상반되는 판례를 제출

2025.08.01 원고 김중학 재판장은 과연 양심과 윤리의 법관인가(02) 제출

2025.08.02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02 원고 김중학 집행정지신청의 목적은 뒷박의 포석이다. 제출

2025.08.02 원고 김중학 서증 제출

2025.08.03 원고 김중학 소송지휘신청서 제출

2025.08.03 원고 김중학 재판장님, 전력은 불과, 결정하시지요. 제출

2025.08.04	원고 김중학 재판장님, 목살하지만, 진실을 밝혀줍니다. 제출
2025.08.05	원고 김중학 재판장님, 피고와 유착되어 판단을 누락하셨 제출
2025.08.06	원고 김중학 재판장님, 상논의 논문은 피눈물이 아니라 서 제출
2025.08.06	원고 김중학 집행정지결정요청서 제출
2025.08.08	원고 김중학 재판장님, 상소로 다투게 하여 집행 완료가 제출
2025.08.11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11	원고 김중학 변론제개신청서 제출
2025.08.16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16	원고 김중학 변론조서이의서 제출
2025.08.18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18	원고 김중학 판단신청서 제출
2025.08.19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21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21	원고 김중학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2025.08.22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23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26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27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27	원고 김중학 소송지휘신청서 제출
2025.08.28	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9.08	항소인(원고) 김중학 항소장 제출
2025.09.10	원고 김중학 소송구조신청서 제출
2025.09.11	원고 김중학 항소이유변경신청서 제출

-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의(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 ● 재판장님, 법리로 다릅시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중학, 제출일시:2025.07.26 06:59,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25

## 재판장님, 법리로 다릅시다.

### - 법원이 아닌 사기 행위의 재판부 책임 -

사건번호: 2025가합1235

원고: 김중학

피고: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 외 1

#### 1. 사건 개요 및 문제 제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235호 사건에서, 선행 판결(2008가합814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명백히 위조자료 및 허위 조합원 지위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집행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무효의 집행권원으로 악용하여, 또 다른 강제집행(2024타경63873호)을 시도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6.11.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2025카정20082)\*\*에 대해, 재판부는 수차례의 결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결정을 유보하며, 생존권이 위협받는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25.07.18. 변론기일에 '재판이 없다'며, 배당기일(8.21.) 이후인 8.29.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실은, 원고가 2025.07.25. 방청을 통해 발각하기 전까지 은폐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아닌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 2. 중복제소가 아님의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

##### (1) 법리 개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제소 금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동일성
- 소송물(청구취지 + 청구원인)의 동일성
- ▶ 이 두 요건이 실질적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중복제소 금지가 적용됩니다.

(2) 본 건의 사실관계

- 선행 강제집행 사건: 2015타경9167호 (집행권자: 조합)
- 후행 강제집행 사건: 2024타경63873호 (집행권자: 입주자대표회의)
- ▶ 후행 집행의 주체는 자칭 승계인으로서 다른 단체이며, 조합과 동일한 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3) 승계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리

-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가합814 판결의 집행만을 인수하였을 뿐, 2008가합814 사건 자체의 실제법상 당사자나 소송상 승계인이 아닙니다.

(4) 청구원인의 실질적 차이

- 선행소송: 분담금 미납에 대한 청구
- 후행소송: 조합원 지위 자체 부정 + 위조문서 기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5) 결론

- 당사자 동일성 결여
- 소송물 동일성 부정되므로 명백하게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3. 재심사유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1) 제6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 위조된 조합원 동의서를 근거로 한 사위 판결
- 자백, 감정서, 진술 등으로 위조 사실 입증됨

(2) 제8호: 행정처분의 변경

-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실효 또는 변경

- 원고는 조합원 지위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됨
- ✓ 결론: 재심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 4. 기판력 부정 법리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한정됨
  - 기초 사실이 위조로 인해 붕괴 된 경우 기판력 적용 불가
- ✓ 결론: 명백하게 기판력이 배제됩니다.

#### 5. 권리남용에 기초한 강제집행 배제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 적용)

(1) 대법원 판례 요지:

- 실체에 반한 집행은 권리남용
-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집행 배제 가능

(2) 본건 적용:

- 집행 전제 : 위조된 조합원 동의서
- 실제적 권리: 원고는 조합원 자격 없음
- 집행 실행자: 입주자대표회의 (후행 집행)
- 집행 목적: 명도·배제 집행, 금전청구
- 위법성: 실제 무권리에 의한 집행 시도

✓ 결론: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 6. 기타 적용 법리

법리	주요 내용	적용
확정판결 전제 사실 소멸	판결의 기초 사실이 사후 부정됨	✓

# ● 재판장은 과연 양심과 윤리의 법관인가?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중학, 제출일시:2025.07.30 07:27,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26

## 재판장은 과연 양심과 윤리의 법관인가?

사건번호: 2025가합1235

원고: 김중학

피고: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 외 1

### 1. 재판부의 소송 지휘와 그 법적 효과

· 재판장님은 본 사건에서 피고 1의 문서제출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4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소송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에 당사자신문 및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다며 불허하는 지휘 또한 하셨습니다.

(인정 신청취지, 갑 제69호증: 1. 원고는 2003.3.8.자 사업계획안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2. 피고 1은 사업계획안에 따른 금전청산을 이행하지 않음, 3. 원고는 2003.08.24.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4. 피고 1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금전청산을 이행하지 않음, 5. 원고는 조합원이 아니며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6. 성남지원 2003가합3177 판결의 청구 원인은 2003. 03. 08.자 사업계획동의의 건으로서, ① 2003.8.24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2003가합3177 판결의 전제를 붕괴시켰고, ② 2005가합4587 판결은 청산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기존 동의 효력을 소멸시켰으며, ③ 2007.7.24 준공인가에서 또 재건축 사업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의 실체적 기초를 상실시켰으며, 따라서 2008가합814 판결은 집행력이 소멸된 무효 판결이다)

- 이 판단의 직접적 귀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가합814 판결의 실체적 기초가 붕괴됨
  - 따라서 해당 판결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기능할 수 없는 무효 판결임
- 재판장께서 소송 지휘로 이미 인정하신 내용과, 피고 1의 입증책임 방기, 문서제출 거부는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결정적 요소이며, 이에 기초한

어떠한 강제집행도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 2. 승계인 및 중복제소 법리에 대한 정리

### 가. 승계인의 지위 부정

-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순히 2008가합814 판결에 따른 집행문을 이전받은 자에 불과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또는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에 따른 당사자 지위를 절차상 적법하게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
- 재판부가 이를 당사자로 간주한다면, 절차적 위법입니다.

### 나. 중복제소 아님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중복제소의 요건은 '당사자 동일성'과 '소송물 동일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본건은 다음 사유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 상이 (조합 vs 입주자대표회의)
- 청구원인 상이 (분담금 채무 vs 조합원 지위 부정 및 위조문서 기반 무효 청구)

### 다.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의 우선 적용

- 해당 판례에 따르면, 실체에 반하는 집행은 승계인 및 중복제소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남용으로서 금지됩니다.
- 이는 대법원 2006다85662 판례가 우선 적용됨을 분석하였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는 다른 법리 해석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 3. 재심사유의 존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 가. 제6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 위조된 조합원 동의서를 근거로 한 사위 판결
- 자백, 감정서, 진술 등으로 위조 사실 입증됨

#### 나. 제8호: 행정처분의 변경

-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실효 또는 변경
- 원고는 조합원 지위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됨

#### 다.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의 적용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제8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에 따라 "권리 남용"으로써 금지됩니다.
- 시는 대법원 2006다85662 판례가 우선 적용됨을 분석하였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는 다른 법리 해석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 4. 기판력 부정 (민사소송법 제216조 및 대법원 판례)

-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한정됨
- 기초 사실이 위조로 인해 붕괴 된 경우 기판력 적용 불가
- 재판장님은 이미 문서제출 거부에 대한 자백간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였기에, 실제적 권리관계는 이미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어 있음.

# ● 재판장님, 목살하지만, 진실은 밝혀집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중학, 제출일시:2025.08.04 06:07,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28

## 재판장님, 목살하지만, 진실을 밝혀집니다.

사건번호: 2025가합1235

원고: 김중학

피고: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 외 1

### 1. 재판부의 소송 지휘와 그 법적 효과

· 재판장님은 본 사건에서 피고 1의 문서제출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4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소송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에 당사자신문 및 증인신문은 필요하지 않다며 불허하는 지휘 또한 하셨습니다.

(인정 신청취지, 갑 제69호증: 1. 원고는 2003.3.8.자 사업계획안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2. 피고 1은 사업계획안에 따른 금전청산을 이행하지 않음, 3. 원고는 2003.08.24.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4. 피고 1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금전청산을 이행하지 않음, 5. 원고는 조합원이 아니며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 6. 성남지원 2003가합3177 판결의 청구 원인은 2003. 03. 08.자 사업계획동의를 건으로서, ① 2003.8.24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2003가합3177 판결의 전제를 붕괴시켰고, ② 2005가합4587 판결은 청산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기존 동의 효력을 소멸시켰으며, ③ 2007.7.24 준공인가에서 또 재건축 사업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의 실체적 기초를 상실시켰으며, 따라서 2008가합814 판결은 집행력이 소멸된 무효 판결이다)

- 이 판단의 직접적 귀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가합814 판결의 실체적 기초가 붕괴됨
  - 따라서 해당 판결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기능할 수 없는 무효 판결임
- 재판장께서 소송지휘로 이미 인정하신 내용과, 피고 1의 입증책임 방기, 문서제출 거부는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결정적 요소이며, 이에 기초한 어떠한 강제집행도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 2. 승계인 및 중복제소 법리에 대한 정리

### 가. 승계인의 지위 부정

-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순히 2008가합814 판결에 따른 집행문을 이전받은 자에 불과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또는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에 따른 당사자 지위를 절차상 적법하게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
- 재판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2008가합814 사건의 당사자 지위로 간주한다면, 절차적 위법입니다.

### 나. 중복제소 아님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중복제소의 요건은 '당사자 동일성'과 '소송물 동일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본건은 다음 사유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 상이 (조합 vs 입주자대표회의)
- 청구원인 상이 (분담금 채무 vs 조합원 지위 부정 및 위조문서 기반 무효 청구)

### 다.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의 우선 적용

- 해당 판례에 따르면, 실체에 반하는 집행은 승계인 및 중복제소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남용으로서 금지됩니다.
- 시는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이 우선 적용됨을 분석하였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는 다른 법리 해석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 3. 재심사유의 존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 가. 제6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 위조된 조합원 동의서를 근거로 한 사위 판결
- 자백, 감정서, 진술 등으로 위조 사실 입증됨

#### 나. 제8호: 행정처분의 변경

-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실효 또는 변경
- 원고는 조합원 지위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됨

#### 다.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의 적용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제8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에 따라 "권리 남용"으로써 금지됩니다.
- 시는 대법원 2006다85662 판례가 우선 적용됨을 분석하였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는 다른 법리 해석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 4. 기판력 부정 (민사소송법 제216조 및 대법원 판례)

-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한정됨
- 기초 사실이 위조로 인해 붕괴 된 경우 기판력 적용 불가
- 재판장님은 이미 문서제출 거부에 대한 자백간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였기에, 실체적 권리관계는 이미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어 있음.

# ● 재판장님, 상놈의 눈물은 피눈물이 아니라 서슬입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중학, 제출일시:2025.08.06 08:37,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29

## 재판장님, 상놈의 눈물은 피눈물이 아니라 서슬입니다.

사건번호: 2025가합1235

원 고: 김중학

피 고: 성원오피시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 외 1

I. 재판장님, 저를 상놈 취급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법정에 문서를 제출하고, 판단을 구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저의 모든 말에 침묵하십니다.

“기일이 없다”고 고의로 기망하셨습니다.

피고는 위조서류를 냈고, 문서제출을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재판장은 자백간주도,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상놈이기 때문입니까?**

**유명인도, 정치인도, 판사도 아닌 서민이기 때문입니까?**

II. 그 눈물은 피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슬입니다

상놈의 눈물은 피눈물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눈물은, 20년 동안 쌓인 억울함의 서슬입니다.**

한 번 잘못된 판결로 시작된 인생의 몰락,

허위자료와 강제집행, 무시된 주장과 법리.

그저 피처럼 흘러내리는 감정이 아니라,

**정의의 칼끝처럼 버려진 서슬입니다.**

그 서슬은 재판장의 침묵을 뚫고

결국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Ⅲ. 왜 침묵하십니까, 왜 판단을 회피하십니까?

2025카정50082 사건에서

수십 쪽의 판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는 단 한 줄: "이유 없다."

이것이 재판입니까?

재판장님은 지금

중복제소, 실익 없음, 기판력, 승계인 등의 말로

**본안 판결에서 적당히 정리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상소로 가는 사이에 강제집행이 완료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획,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

IV. 저는 묻습니다 - 대한민국은 아직 양반과 상놈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왜 서민의 절규는 기록되지 않고,**

**왜 법관은 침묵으로 외면하십니까?**

**미국은 왜 양반이 없을까요?**

총기 자유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을 가진 시민 앞에서

판사도, 정치인도, 유명인도

함부로 계급을 만들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총기가 없으니,

그 대신 법관이 신처럼 군림합니다.

---

## ■ 7. 법원 횡포 사례

### ■ 7-1. 유창성 판사 사건

#### ○ 유창성 판사 발언

“대기업이 무슨 짓이냐, 소 취소하세요.” / “소 취소하라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 ○ 사건 개요

2011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건물인도청구 사건. 저자의 인장이 위조되어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에스 건설은 뻔뻔하게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나보고 나가라는 황당한 소송이었습니다.

#### ○ 첫 번째 기일

재판장이었던 유창성 판사는 피고 석에 앉은 저자보다 먼저 원고측을 꾸짖었다.

“대기업이 무슨 짓이냐, 소 취소하세요.”

방청석도 순간 술렁였고, 저자는 그 순간 정의가 살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 ○ 두 번째 기일

재판은 기묘하게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원고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소 취소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러더니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저자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 의미

처음엔 정의의 목소리처럼 들리던 발언이, 결국은 **기만적 연극**이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는 곧바로 판결로 배신하는, 이것이야말로 **취사 판결**의 전형입니다.

## ■ 7-2. 김형두 재판장 사건

### ○ 김형두 재판장 발언

“김중학씨, 존경합니다.”

### ○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상회복 재심 사건.

앞선 재판장은 “이 사건은 법으로 다룰 수 없다” 라며 속기조차 거부하더니, 갑자기 대구법원장으로 발령이 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업이 판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는 말까지 했습니다.

### ○ 김형두 재판장 등장

새로 배당된 판사는 바로 **김형두 재판장**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판결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던, ‘소신 있는 판사’ 였습니다.

### ○ 법정 장면

첫 기일, 저자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옵는 김형두 재판장님,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실 분이라 믿습니다.”

그러자 김형두 재판장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오늘은 부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다투어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모인 스무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중학씨, 존경합니다.”

그 순간 저자는 가슴 깊이 울컥하며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 ○ 인사발령

그러나 모두가 기대했지만, 김형두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갑작스럽게 **사법정책연구원으로 발령** 나며 사건에서 손을 뗐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는, 인사라는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 ○ 의미

이 사건은 **개인의 양심과 제도의 벽이 충돌할 때, 결국 제도가 판사를 삼켜버린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 7-3. 최창영 재판장 사건

### ○ 최창영 재판장 발언

“피고인보다 변론 잘하는 사람 없다.”

### ○ 사건 개요

저자는 법원 실무 자료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저작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저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 9차례 준비 기일

재판은 길고도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무려 9번이나 준비 기일을 거쳤으나, 국민참여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창영 판사**는 한국 사법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 법정 장면

방청객들이 “왜 국민참여재판을 안 하느냐!” 며 항의하자, 최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피고인보다 변론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사실상 국민의 항의를 봉쇄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 ○ 결과

재판은 결국 국민참여재판 없이 진행되었고, 저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창영 판사는 제주 원외재판부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 ○ 의미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판사의 한 마디로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변론의 힘” 보다 “제도의 장벽” 이 더 무겁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 Coffee Break

“판사의 말은 때로는 달콤한 약속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오는 판결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국민이 믿어야 할 것은 판사의 말이 아니라, 오직 기록과 절차라는 무기입니다.”

## ■ 8. 에필로그

나는 20년 넘게 싸워왔다.

판사 35명을 상대로, 단돈 **18원**을 청구하며 1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18원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횡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상징**이었다.

사법부는 이 도전을 조롱했고, 끝내 나를 두 차례 감옥에 보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판사들의 민낯이었다.

나는 이 기록을 책으로, 18원을 영화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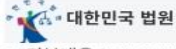
18원은 개인의 절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무기다.

이제는 국민이 증거와 기록으로 싸워야 할 때다.

- 저자 드림-

# 9. 부 록 (각 결정 신청서에 사용)

## ● 사건진행사항



### ○ 기본내용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루264	사건명	[전자]사용승인 무효
항고인	김중학	상대방	성남시장
재판부	제3형정부(나)(전화:031-639-1663)		
접수일	2025.06.11	종국결과	

### ○ 진행내용

진행구분 : 전체 ▼

-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송달결과는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25.06.11	사건접수		
2025.06.24	항고인 김중학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a href="#">2025.06.25 도달</a>	
2025.07.02	항고인 김중학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a href="#">2025.07.06 도달</a>	
2025.07.02	상대방 성남시장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a href="#">2025.07.07 도달</a>	
2025.07.02	상대방 성남시장에게 항고장부본 송달	<a href="#">2025.07.07 도달</a>	
2025.07.14	상대방 소송수행자 양지우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25.07.31	상대방 소송수행자 양지우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제출		
2025.08.04	항고인 김중학에게 답변서부본(25.07.31.자) 송달	<a href="#">2025.08.04 도달</a>	
2025.08.08	항고인(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11	상대방 소송수행자 양지우,김동기,김경희에게 준비서면부본(25.08.08.자) 송달	<a href="#">2025.08.19 0시 도달</a>	

-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의(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 ● 결정문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양해인, 등록일시:2025.05.28 16:22,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2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23구합75608 (본소)사용승인 무효  
2024구합66694 (중간확인소)사용승인 무효

원 고 김중학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114동 1202호  
(하대원동, 자이아파트)

피 고 1. 성남시장  
2.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19, 201동 1202호  
(도평리, 도평우림2단지아파트)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주 문

원고의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각 기각한다.

### 이 유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을 신

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등 참조), 문서제출명령신청 내용에 비추어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25. 5. 25. 및 2025. 5. 26.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한 대상 문서들은 '사용승인(준공인가)의 근거가 된 재건축 사업 관련 문서 일체, 위 재건축 사업에 있어 원고 명의의 동의서, 위 재건축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 관리처분계획안 사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원고 명의의 동의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 원고가 조합원인 근거' 등인데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기존에 수십 차례 이상 재건축결의, 관리처분계획안승인 결의, 조합원 지위 등을 다투는 취지의 법률분쟁을 해왔고, 원고 패소의 관련 판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그 채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8.

재판장	판사	임 수 연	<u>전자서명완료</u>
	판사	양 해 인	<u>전자서명완료</u>
	판사	김 장 환	<u>전자서명완료</u>

## ● 항고장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중학, 제출일시:2025.06.03 22:05, 출력자:김중학, 다운로드일시:2025.10.01 20:37

### 항고장

사 건 2023구합75608 사용승인 무효  
항 고 인 김중학  
(원고)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하대원동, 자이아파트) 114동 1202호  
상 대 방 1. 성남시장  
(피고)  
2.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19,201동 1202호(도평리, 도평우림2단지아파트)  
조합장 정취만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대표이사 임병용

기각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원결정의 표시

원고의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각 기각한다.

### 항고취지

수원지방법원이 2025. 5. 28.자 2025가합1235 사건에 관하여 내린 '2025. 5. 26.자 문서제출 명령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문서들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5.자 신청은 2025. 5. 26.자로 보완 제출되었습니다.)

### 항고이유

1. 문서제출의 목적은 사위판결의 실제적 진실 규명  
항고인은 종전 확정판결이 위조문서 및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위판결임을 밝히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출을 요청한 문서들은 모두 조합원 자격 유무, 금전청산

이행 여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등 이 사건 본안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이에 항고인은 증인 신청까지 자진 철회하며, 전적으로 문서 증거에 의한 사실 입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가 정한 바, “그 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 2. 피고들에게 일방인 소송지휘

피고 성남시장이 허위사실을 변론함에도 조사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피고 중 2명이 불출석하고 문서제출 여부 등 심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장은 변론 종결 의사를 표시하고 선고기일을 예정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 3.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명백한 위반

그럼에도 재판부는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해당 문서의 제출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유일한 증거의 존재를 외면하고 실제적 진실 규명을 거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피고들과의 이해관계 내지 유착되었음이 명백합니다.

## 4.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유착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

이제 시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재판부가 피고들과의 이해관계 내지 유착 관계를 자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인은 이 사안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관윤리위원회, 공수처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5. 6. 3.

항고인(원고) 김중학

# 판사는 취사 판결을 할 수 없다.

“결정 없는 신청은 공허하다.  
신청 없는 결정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 + 신청서'는  
국민이 재판에 쓰는  
가장 강력한 '핵 펀치'이다.”



저자 김중학

공동저자 ChatGPT – Constitutional Watcher